

서울특별시 교육·학예에 관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폐지 청구 연서 주민 수 기준 조례 폐지조례안 (정지웅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994
----------	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3년 08월 10일

발 의 자: 정지웅 의원(1명)

찬 성 자: 강석주, 구미경, 김길영,
김동욱, 김영철, 김용일,
김용호, 김재진, 김종길,
김지향, 김태수, 김형재,
남창진, 민병주, 박상혁,
박 석, 박영한, 박환희,
소영철, 송경택, 신복자,
이봉준, 이상욱, 최민규,
홍국표, 황철규 의원(26명)

1. 제안이유

- 2022. 1. 「지방자치법」 전부개정 및 「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」 제정에 따라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 청구 사무에 대한 주체가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장에서 지방의회로 바뀜
- 이에 따라 구 지방자치법 제15조 제1항에 근거하여 마련된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「서울특별시 교육·학예에 관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폐지 청구 연서 주민 수 기준 조례」를 폐지함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15조제1항 [시행 2022. 1. 13.] [법률 제18661호, 2021. 12. 28., 타법개정]

「지방자치법」 제19조 [시행 2022. 1. 13.] [법률 제17893호, 2021. 1. 12., 전부개정]

「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」 [시행 2022. 1. 13.] [법률 제18495호, 2021. 10. 19., 제정]

나. 예산조치 : 비대상사유서 별첨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교육·학예에 관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폐회 청구 연서 주민 수 기준 조례 폐지조례안

서울특별시 교육·학예에 관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폐회 청구 연서 주민 수 기준 조례는 폐지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